

【붙임 1】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5 - 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전담요원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 노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일

수 원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	응시자격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결핵관리 전담요원	1명	2026. 1. 19. ~ 2026. 7. 24.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결핵환자 접촉자 및 역학조사 접촉자 등 흉부 X-선 촬영보건소 내소 결핵 및 방사선실 민원 상담 및 등록보건소 흉부 X-선 검사 판독 의뢰	방사선사

2. 근무조건

- 가. 신분유형: 기간제노동자
나. 계약기간: **2026. 1. 19. ~ 2026. 7. 24.(약 6개월)**
※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변경 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주 5일(평일), 일 8시간
라. 근무지: 권선구보건소
마. 보수기준

급여지급유형	근무시간	채용인원	보수금액	기타보수
월급제	09:00 ~ 18:00 (8시간)	1명	일급: 1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 가입 • 위험수당 별도 지급

※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

※ 추후에 새로운기준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나. 보건소 및 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

다. 친절한 민원응대 및 컴퓨터 사용(워드, 엑셀 등) 가능자 우대

라. 일 8시간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조건을 갖춘 자 (장애인 포함)

마.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근무시간 내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개인사업, 주식, 코인거래 등)

○ 타 기관 중복근무 지원 불가

바.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9. 그 밖에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4. 채용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5. 12. 22.(월) ~ 12. 30.(화)	2025. 12. 22.(월) ~ 12. 30.(화)	2026. 1. 2.(금) [합격자 개별통보]	2026 1. 6.(화) [예정]	2026. 1. 7.(수) [예정]

※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서류구비, 자격요건, 경력사항 등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

나. 2차 시험: 면접심사(직무수행 적격성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하며, 근무자 결원(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우선채용 가능함.

다. 최종합격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신원조회) 조회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5. 12. 22.(월) ~ 12. 30.(화) 18:00**

-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jinhyuk9812@korea.kr)

다. 제출서류

-
- ①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 4호)
 - ②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호, 동의여부 체크·서명 필수)
 - ④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⑤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1부
 - ⑦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 담 당 자: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5191-0353)

7. 유의사항

-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면접 등 지정된 심사 일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다.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라. 응시서류 제출 및 면접심사 참석 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마. 응시자격(결격사유, 근무경력 등)을 위반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또는 채용 후라도 신원조회, 결격사유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바. 서류심사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채용계획 재공고 후 채용절차를 재진행하거나 별도의 공고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직접 방문 방식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
- 아. 본 채용계획의 일정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자.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31-5191-0353)으로 문의

[붙임 2]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주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불가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구직자에게 안내 필요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u>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u>종료된 날</u>(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